

## <토론 요지>

金東建(서울대 行政大學院 教授): 본인은 行政大學院에서 財政學, 經濟學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고 또 高試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高試制度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몇마디 하고자 한다. 사전에 검토할 수 있었던 원고가 정정길 교수의 行政高試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먼저 募集人員의 擴大 問題로, 維新事務官이 폐지되고 우리의 政治, 經濟的 發展에 따라 public sector가 강화되고 그와 함께 公務員의 數가 증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5級 公務員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單純論理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며 正當한 行政需要와 下級職公務員의 數와의 均衡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7級 公務員의 경우는 계속 減少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7級 公務員의 減少에 대한 代替效果로서의 5級 公務員 增加는 단순논리에 의한 것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資格要件의 強化의 경우 年齡制限에 있어서는 上限線을 30歲 정도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하지만 學歷制限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따른다. 즉 國家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教育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學歷을 制限할 경우 平等의 문제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므로 豫備考査制度의 導入과 같은 screen 節次를 채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세째로 職類 및 職列의 擴大에 관해서 보건대 政府機能의 多樣化에 따른 職類, 職列의 擴大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는 高試를 통한 選拔에 있어서의 細分化보다는 高試科目의 調整을 통하여 다양한 職의 業務遂行能力을 測定함으로써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職類의 細分化는 高位職으로 진출하게 될 5級에서 보다 오히려 7級쪽의 專門化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政府組織運營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한편 高試科目의 조정문제는 실로 利害關係의 對立이 첨예한 분야로 당장 어찌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이지만 基本的으로 政府의 組織 및 機能, 公務員의 業務遂行能力 등을 감안해 볼 때 分析의 視角을 넓힐 수 있는 科目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鄭교수의 견해에 공감한다. 솔직히 현재의 시험은 너무 制度的 側面만을 강조하는 것 같으며 選擇科目에서 나타나는 package들의 실정이 너무나 不合理한데 이 또한 利害關係의 對立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學生들 편에서는 法系統의 科目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음을 말해두고 싶다. 궁극적으로는 政府의 機能 및 役割에 基礎하고 大學教育과 연계된 科目들로의 조정이 요구되며 특히 朴相變 교수가 말한, 바람직한 公務員으로서의 人品分析 및 資質把握을 위한 面接試驗의 活用問題는 당장은 그 實施가 어렵더라도 長期的으로 檢討, 開發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梁承斗(延世大 法大 教授): 行政高試의 경우 1년에 몇 명이라는 식의 人員選拔은 너무 안목이 짧은 것이며 이러한 方式으로 과연 長期的인 行政需要에 對處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

문이다. 비근한 예로 特許廳의 特許審査官이 대만이 부족하며 나아가 知的 所有權問題, 國際教育의 問題가 발생 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主務機關인 總務處에서 長期的 行政需要에 대한 blue-print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試驗科目의 문제인데 試驗이란 기본적으로 公務員으로서 基本的 資質, 知識(knowledge) 및 業務遂行의 道具(tool)가 될 知識, 이 3者를 測定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시험은 너무 後 2者에 치우치는 경향이 짙다. 여기에서 나는 法科目의 追加가 要望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行政學의 경우 legalism은 20세기초의 발상으로서 이미 극복된 것이라 하여 그 重要性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경우에는 타당할지 몰라도 우리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말이며 여러가지 公聽會 등에서 나타나는 法の 支配 또는 法治主義에 대한 行政公務員의 基本認識의 부족으로 미루어 볼 때 法科目은 公務員의 基本的 資質을 評價하는 좋은 手段으로 구실할 수 있을 것이고 그 水準은 현재 各 大學에서 강의되고 있는 法學概論보다 약간 높은 水準, 즉 legal mind를 갖출 수 있는 水準이라면 바람직할 것이다. 여러 교수님들이 발표, 토의했던 바와 같이 試驗科目에 內包되어야 할 內容의 문제에 관해서 볼때 그 基本的인 內容과 範圍들이 사전에 高試標의 발행시에 確定 公告되어야 할 것이다.

**李相冕(서울大 法大 教授):** 김교수님과 양교수님이 行政高試에 대한 많은 훌륭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로 外務高試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學歷制限의 경우는 大學 3年 修了者로 制限하는 것이 우수한 公務員의 選拔이나 大學教育의 正常化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試驗科目에 있어서는 현재 2次科目으로 되어 있는 第2外國語를 1次科目으로 하여 基本的인 語學實力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代替科目으로는 國際通商關係의 重要性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國際私法 및 國際商去來法 정도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한편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國民倫理를 대신할 科目으로서는 行政公務員의 基本的 素養이랄 수 있는 行政法이 좋을 것이며 採點問題는 朴相燮 교수가 제안한 方法이 훌륭한 것 같다. 한편 研修關係에 있어서는 현재의 研修院 教育過程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6개월 研修후 2年 정도의 海外研修를 실시하는 제도는 계속 보완 추구에 나가야 할 좋은 制度라고 생각한다.

**정정검(外務部 條約局長):** 최근 外交環境의 變化 및 우리의 國際的 地位 向上에 따라 外務部 職員들은 무거운 責任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外務部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人力을 選拔하기 위한 試驗制度의 문제 또한 실로 重且大한 것이라 하겠다. 全方位 外交의 展開 및 世界의 地球村化 時代에서 우리의 國益을 堅持하기에 충분한 資質을 갖춘 사람의 선발이 요망된다. 한편 外務高試가 司法 및 行政高試에 비해 選拔人員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國際情勢 속에서 國家를 代表하는 職業外交官으로서 공부하며 일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생각해 보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사회자:** 세상이 바뀌어 法治主義를 통한 民主主義, 法の 支配를 구현한다는 의도에서 舊

態에서 벗어나 새로운 時代에 맞는 새로운 制度를 모색해 보는 場으로서, 오늘 이루어진 國家試驗制度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